

안양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규정

제정 1997. 4. 4. 훈령 제315호
개정 2004. 9. 6. 훈령 제443호
일부개정 2020. 1. 31. 훈령 제706호(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일괄
정비 규정, 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3. 12. 29. 훈령 제750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5. 7. 1. 훈령 제761호(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다목적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1. 31., 2023. 12. 29.>
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다목적복지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0. 1. 31., 2023. 12. 29.>

② 본 규정 제정 이후 건립되는 다목적복지회관과 공공청사 겸 다목적복지회관도 포함된다. <개정 2023. 12. 29.>

제3조(시설)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9.>

1. 경로당
2. 어린이집(보육시설)
3. 다용도실
4. 회의실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2장 회관의운영

제4조(업무)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
1. 노인의 여가선용 활동 지원
2. 어린이집 설치 운영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회관의 운영) ① 회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단체 등”이라 한다)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회관 내 시설별 운영시간은 실정에 맞도록 자율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설별 운영지침 또는 규정이 별도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
제6조(회관의 관리) 회관은 소재지 동장이 관리한다.

제3장 시설의위탁

제7조(위탁 신청) ① 시설을 위탁받고자하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설의 위탁) ① 시장은 건실한 단체 등을 수탁자로 정하여 승인한다.

② 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간에 별도의 위·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위탁계약시 회관의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9.>

제9조(예산의 지원)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단체 등에게 위탁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이 정한 지원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약정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를 회관운영 및 시설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제11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9.>

1. 수탁된 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할 경우
2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시설물을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
4.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② 위탁이 취소되면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4장 시설의사용

제12조(사용자의 범위)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.

제13조(사용 신청) 다용도실 및 다목적회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동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<개정 2023. 12. 29.>

제14조(사용료) 회관의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9.>

제15조(사용자의 의무)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
제16조(사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9.>

1.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
2.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3.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7조(손해배상) ① 시장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② 시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시킨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<개

정 2023. 12. 29.>

제5장 보칙

제18조(장부 등의 비치)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제19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
②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9. 6. 훈령 제443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. 31. 훈령 제706호, 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일괄정비 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2. 29. 훈령 제750호>

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에 시행한다.

부칙 <2025. 7. 1. 훈령 제761호, 안양시 동 지원 담당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「안양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다목적복지회관 현황의 “박달2동다목적복지회관”을 “호현동다목적복지회관”으로 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5. 7. 1.>

다목적복지회관 현황

명 칭	위 치	층 수	면 적(㎡)		준공일시 (리모델링)
			부지면적	건축연면적	
안양2동 다목적복지회관	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59	지하1층/ 지상3층	758.7	1,183.25	1998.07.22.
안양4동 다목적복지회관	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93번길 41	지하1층/ 지상4층	354.4	983.5	1998.09.23.
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	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94-9	지하1층/ 지상6층	460.1	1,795.85	1995.09.12.
안양8동 다목적복지회관	안양시 만안구 명학로5번길 12	지하1층/ 지상4층	427.9	1,066.09	1997.01.09.
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(석수1동)	안양시 만안구 삼막로24번길 107	지하1층/ 지상3층	264	872.98	2015.09.16.
석수2동 다목적복지회관	안양시 만안구 안양로532번길 13-8	지하1층/ 지상3층	403.4	587.01	1995.11.20.
충훈동 다목적복지회관	안양시 만안구 충훈로90번길 47	지하1층/ 지상3층	408	895.8	1997.01.04.
충훈동 다목적복지회관(2관)	안양시 만안구 석수로212번길 23	지하1층/ 지상3층	234	774.88	1991.03.09. (2022.06.29.)
호현동 다목적복지회관	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72번길 46	지하1층/ 지상3층	1,403	1,421.75	1998.05.17.
인덕원동 다목적복지회관	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24번길 60	지하1층/ 지상4층	992.9	1,698.79	1998.07.30.
호계2동 다목적복지회관	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25	지하1층/ 지상3층	613.4	1,189.05	1995.12.19.
호계3동 다목적복지회관	안양시 동안구 포도원로27번길 39	지하1층/ 지상3층	463	597.66	1994.12.20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3. 12. 29.>

위 · 수 탁 운 영 신 청 서				
신 청 인	주 소 (소 재 지)			
	법인 명칭 (단 체)		설 립 연 월 일	
	대 표 자 성 명		생 년 월 일	
위 · 수 탁 기 간		년 년	월 월	일부터 일까지
위 · 수탁하고자 하 는 시 설				
위 · 수 탁 목 적				
「안양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규정」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○○동 다목적복지회관 내 어린이집 시설을 위 · 수탁 운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) 안 양 시 장 귀하				

